

- 마. 인도구속영장의 집행 촉탁(법 제20조제2항 신설)
 검사가 군검찰관에게 집행을 촉탁하고 군검찰관이 군사법경찰관을 지휘하여 영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
- 바. 범죄인인도청구 관련 준비명령 규정(법 제42조제2항 신설)
 법무부장관이 검사장에게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사. 검사의 범죄인인도청구 등 건의(법 제42조의3 신설)
 필요한 경우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범죄인인도청구 등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
- 아. 법무부장관의 통과호송 승인요청(법 제45조의2 신설)
 법무부장관이 외국에 대하여 통과호송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자. 출입국에 관한 특칙(법 제51조 신설)
 여권이 없어도 범죄인인도 관련서류 등으로 범죄인의 출국 및 입국이 가능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5년12월14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천 정 배
법무부장관

◎法律 第7728號

訴訟促進등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

訴訟促進등에관한特例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訴訟促進등에관한特例法”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刑法”을 각각 “「형법」”으로, “直接的인 物的 被害 및 治療費 損害의 賠償”을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으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하여 이를 제40조로 하고, 제36조 내지 제3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①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해당 피고사건이 계속 중인 제1심 또는 제2심 법원에 공동하여 그 합의를 공판조서에 기재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합의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지불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피고인 외의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그 지불을 보증하거나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제1항의 신청과 동시에 피고인 및 피해자와 공동하여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변론종결 전까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당해 신청과 관련된 합의 및 그 합의가 이루어진 민사상 다툼의 목적인 권리를 특정함에 충분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의 효력 및 화해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20조 및 제38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화해기록) ①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합의를 한 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형사소송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판조서(해당 합의 및 그 합의가 이루어진 민사상 다툼의 목적인 권리를 특정함에 충분한 사실이 기재된 부분에 한한다), 당해 신청과 관련된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그 밖의 당해 합의에 관한 기록(이하 “화해기록”이라 한다)의 열람 또는 복사, 조서의 정본·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화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 조서의 정본·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화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민사소송법」 제223조의 예에 의하고, 화해기록에 관한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절차는 동법 제163조의 예에 의한다.

④화해기록은 형사피고사건의 종결 후에는 당해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에서 보관한다.

제38조(화해절차 당사자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준용) 제36조 및 제37조에 규정하는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절차에 있어서 당사자 및 대리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1절(선정당사자 및 특별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 및 제4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집행문부여의 소 등에 대한 관할 특칙) 제36조에 규정하는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에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

33조·제44조제1항 및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40조(위임규정) 배상명령의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제36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에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으로 하며, 제22조 및 제23조의2제1항·제3항 단서·제5항 내지 제7항중 “刑事訴訟法”을 각각 “「형사소송법」”으로 하고, 제31조제4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으로 하며, 제33조제5항 본문중 “刑事訴訟法”을 “「형사소송법」”으로 하고, 제34조제1항 및 제4항중 “민사집행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개정이유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배상명령 대상에 위자료를 추가하고, 범죄피해자 및 유족의 신체적·재산적 피해 등과 관련된 민사상 다툼을 형사소송절차 내

에서 간이하게 해결하는 화해제도를 도입하며, 화해절차 및 전속 관할 등 화해제도의 시행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상명령 대상에 위자료 추가(법 제25조제1항)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손해에 더하여 위자료에 대하여도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 도입(법 제36조제1항 및 제5항 신설)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민사상 다툼과 관련하여 합의한 경우, 피고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 또는 항소심법원에 공동으로 공판조서에 그 내용의 기재를 구하는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공판조서에 대하여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함.

다. 화해의 절차(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재판상 화해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금전배상의 경우 이를 보증하거나 연대의무를 지고자 하는 사람도 피고인 및 피해자와 공동하여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들은 변론종결 전

까지 법정예 출석하여 서면을 제출하도록 함.

라. 화해의 집행절차(법 제37조 신설)

화해의 집행력과 실질적 효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판조서 등 화해 관련 기록의 열람·복사와 증명서 교부청구 등을 가능하도록 하되, 그 신청에 관하여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열람·복사 및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이의신청은 「민사소송법」 제223조의 예에,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절차는 동법 제163조의 예에 의하도록 하며, 화해기록은 형사피고사건의 종결 후에는 당해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에서 보관하도록 함.

마. 화해와 관련된 이의절차의 전속관할(법 제39조 신설)

화해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및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의 소는 당해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는 것으로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5년12월14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문화관광부 정동채
장 관

◎法律 第7729號

傳統寺刹保存法 일부개정법률

傳統寺刹保存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환경 보호) 누구든지 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환경을 존중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각종 공사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전통사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종전의 제1항)중 “文化體育部長官은”을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로 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文化體育部長官은 第1項”을 “문화관광부